

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심재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23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17.

발 의 자 : 심재철 · 성일종 · 이종명
이종배 · 박명재 · 김상훈
김기선 · 추경호 · 윤한홍
金成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,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(語文)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적 간결성 ·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(醇化)

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,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,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.

나.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

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.

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독립공채”라 함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.

제3조(신고) ① 독립공채를 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상환)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

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,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,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.
제6조(별칙)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1條(目的) 이 法은 獨立公債의 償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 으로 한다.</p> <p>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“獨立公債”라 함은 1919年 이후 祖國獨立을 위하여 樹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 名義로 발행된 公債를 말한다.</p> <p>第3條(申告) ① 獨立公債를 償還 받고자 하는 者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大韓民國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② 第1項의 申告를 받은 大韓民國 在外公館의 長은 遲滯 없이 그 申告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送付하여야 한다.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2000年12月31日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에 居住하거나 未修交國에 居住함으로 인하여 그 申告期間 내에 申告할 수 없는 者에 대한 申告期間은 따로 大統領令</p>	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독립공채”라 함은 1919년 이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신고) ① 독립공채를 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</p>

으로 정한다.

④ 第1項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4條(償還)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獨立公債 중 美貨로 表示된 獨立公債에 대하여는 元金에 그 公債票 또는 證券에서 정하는 利率에 따라 複利로 計算한 利子를 加算한 金額을, 圓貨로 表示된 獨立公債에 대하여는 발행 당시의 換率에 의하여 美貨로 換算한 元金에 그 公債票 또는 證券에서 정한 利率에 따라 複利로 計算한 利子를 加算한 金額을 償還한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의 複利計算은 1年을 單位로 하며, 그 利子計算期間은 獨立公債의 發行日로부터 償還金의 支給通知日까지로 한다.

第6條(罰則) 獨立公債의 票 또는 證券을 偽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 偽造

다.

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상환)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,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,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 까지로 한다.

제6조(벌칙)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위조 또

또는 變造된 事實을 알면서 이
를 行使한 者도 또한 같다.

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
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.